

설 건축물로 가능한 축종이 있어 사육수의 변화 및 사육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부분 무허가 시설이 발생될 수 있으나 비가림 시설 등 현행법 상 축분 처리시설을 갖출 수 없어 또 다른 무허가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다. 법의 이행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다른법의 범죄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셋째, 가설 건축물도 축사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필요하며 청결유지 준수 조항은 그 기준이 상대적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축산업등록제는 동일성격의 타법과

함께 규제 강화를 위한 법으로 인식되면서 축종에 따라 비판적, 독소적 성격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농촌의 사회적 문제인 기존 농가부채와 더불어 또 다른 부채를 만들게 된다. 무허가 축사(가설 건축물 포함)에 대한 특단의 양성화 조치와 관련 부처간 충분한 행정 협의로 행정 간소화 및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구 및 시설 설치 비용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처럼 정부가 전액 보조하고 지방자치 차원의 대규모 축분 비료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환경분담금으로 축산환경개선에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 한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인에게는 악법이라는 오명과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축산업등록제, 낙농가 대부분 범법자 만들어



이용우
농산부우회장

우리 낙농업의 현실이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에, 더더욱 이 우리 낙농업자의 목을 조여오는 정부의 축산업등록제라 하는 이 법안을 접하고보니 정말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 낙농업이 오늘날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현실을 뒤돌아 보게된다. 과연 지금 이 불황이 우리 낙농가의 잘못인가. 모든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온 것이 아닌가.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 WTO, DDA 등등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낙농가가 잘못해서 생긴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농림부, 낙농진흥회에서는 모든 잘못이 낙농가의 무분별한 증산으로 몰아부치는, 이러한 작태 등을 볼때 과연 우리 정부에서 농업 특히 축산업을 지

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때에 졸속하기만 한 축산업등록제의 도입배경 내용을 조목별로 열거해보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정축산물을 생산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우유가 저품질이고 불안정한 축산물인가?

아니다. 이부분은 당연코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유대체계를 보면 유지방, 세균, 체세포 등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면 내가 영위하는 낙농업이 살아남고, 나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하게하기 위해선 당연히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항생제 등 발육억제물질이 우유에

흔입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낙농가들은 절대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유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다.

둘째,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축산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인가. 젖소의 분뇨가 과연 화공약품보다 더 유해한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우리 농가도 문제가 없진 않다.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은 우리도 반성해야 할 문제이지만 축산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정부, 언론기관 등이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적정 규모의 두당 사육면적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 양축가들이 정부의 권장사항까지 따라 갈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농지전용의 경우 1농가당 전용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3,000m^2$ 이다. 과연 $3,000m^2$ 에다 축사를 얼마나 지을 수 있겠는가. 지금 건설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건폐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축사 면적은 $600m^2$ 이다. 축산업등록제 시행시 낙농업의 경우 두당 $12.8m^2$ 이므로 1농가당 46두 이상은 사육할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과연 우리 농가들이 젖소(육성우포함) 46두를 사육해서 먹고살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로 30두 이상 사육농가가 전체의 8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대다수의 농가가 현행법 위반이 된다. 위 사항을 어길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양축가들은 거의 대부분 범죄자가 되지 않는가?

이는 정부가 양축기를 범법자로 만들고자 하는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전혀 구제 하고자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허가 관계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므로 어찌지 못한다고 한다.

셋째, 축산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한다?
과연 축산업등록제가 축산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까. 등록을 해야하는 일정규모를 정해 놓았다. 그러면 그 규모이하의 농가는 대한민국의 양축농민이 아니란 말인가. 축산정책은 일정규모 이상 양축가만이 혜택 내지는 수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안 일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축산정책 중 방역상황, 사육규모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다하는데 과연 질병 특히 법적전염병은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젖소 10두 미만은 구제역, 부르셀라, 결핵등의 병원균이 피해 간다는 말인가. 이는 허울만 좋은 올가미에 불과한 졸렬하기 그지없는 법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보면 축산업등록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안정축산물 생산, 친환경축산업으로의 유도, 축산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미명아래 축산업자 특히 낙농업자에게 족쇄를 채워 마음대로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졸렬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축종(양계, 양돈)에서는 축산업등록제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이 생기면 생길수록 제 발등만 찍는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등록제를 희망하는 일부 양축가는 끝으로 꼭 한가지를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솝우화에 개구리와 임금님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다. 개구리들이 하느님께 임금님을 내려 달라고 소원을 해 하느님이 통나무를 임금으로 내려주셨다. 근데 개구리들이 통나무를 우습게 보고 다시 다른 임금으로 내려 달라하니 하느님이 이번에는 멋진 두루미를 내려보내 주셨다. 처음엔 개구리들은 자기 임금이 멋있고 품위 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개구리 모두 자기 임금에게 잡아 먹히고 마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지금 당장은 그럴 듯하여 보이나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될 축산업등록제를 막아야 하겠고 막지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현실이나 여건에 맞게 고쳐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다.